

약정되지 않은 자연손해금은 불인정

사건번호 : 92제17호

신청인 : 일본의 A사

피신청인 : 한국의 갑사

품 목 : 독점대리점계약(운송)

청구금액 : US\$89,428.13

판정일자 : 1992. 12. 12

사건개요 : 복합운송업을 하는 신청인은 1989.

7. 1 피신청인을 한국내 독점대리점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강화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1991. 9. 18자로 위 계약을 종결함.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계약의 종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취급하던 업무의 이관과 미정산 운임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미정산 운임의 지급을 일부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US\$89,428.13을 청구하는 본건 중재를 신청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미정산운임 US\$71,311.27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고 항변함.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71,311.27 및 이에 대한 1992. 8. 7부터 1992. 12. 12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4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국제간 복합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일본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XXX주식회사였으나 1992. 4. 1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로 변경)로 신청인의 시베리아 철도 경유의 한국-구주·중동간의 컨테이너 수송업무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한국내 독점적 대리점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1989. 7. 1 체결하고 시베리아 철도와의 화물수송운임은 신청인이 결재하고 피신청인은 한국의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비 중에서 피신청인이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운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1. 3. 23 OO은행 발행의 미화150,000불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시베리아 철도 경우 한국-구주·중동간의 컨테이너 수송업무를 한국내에서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1. 6. 20 계약의 종결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991. 9. 18 쌍방간의 계약이 종결되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1991. 9. 4 계약종결에 따른 합의를 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출화물은 발송기준으로, 한국으로의 수입화물은 도착기준으로 하여 1991. 11. 19 이후에는 피신청인이 취급하던 업무를 신청인이 한국내 설립한 합작회사로 이관하기로 하는 한편 미정산 운임에 대하여 1991. 7월까지 발생한 미화 165, 195.43불은 1991. 9. 6에 미화50,000불, 동년 9. 13에 미화60,000불, 동년 9. 20에 미화58,195.43불을 각 지급하고, 1991. 8월분은 동년 9월말까지, 동년 9월분은 동년 10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1991. 7월분은 지급받고 1991. 8월분 미화268,492.32불중 1991. 10. 11 미화60,000불을 수령하여 잔액 미화 208,492.32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1991. 9월분 미화12,818.95불은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라. 1989. 8. 30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지급 기일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연12%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미지급된 미화221,311.27불에 대하여 1991. 10. 1부터 1992. 2. 13까지의 연이자 미화9,895불을 피신청인은 지급하여야 함으로 1992. 2. 13 현재원본과 지연이자 합계 231,206.27불에서 피신청인의 채무보증을 한 OO은행으로부터 1992. 6. 6 미화 150,000불을 지급받았으므로 1992. 6. 6 현재 원본 및 지연이

자 합계 미화89,428.13불을 피신청인은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1991. 8월과 9월분 미화221, 311.27불에 대하여 신청인이 OO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미화150,000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미화71,311.27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대리점계약서), 동호증의 2(부록), 동호증의 4(연체계정에 대한 합의서), 동제2호증(대리점 계약해지 통고서), 동제3호증(대리점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서), 동제4호증(정산계획 합의서), 동제6호증(계정확인서)과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자인하고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운임정산에 있어서 미화71,311.27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외에 정산에 따른 지급기일 도과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신청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점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71,311.27불과 위돈에 대한 이전 중재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2. 8. 7부터 동년 12. 12까지 연 6푼, 1992. 12.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자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자료 : 중제판정사례집(V, 1994. 12, PP.96-99>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책임

운송지연 관련 책임을 둘러싼 무역업체와 운송업체간의 분쟁은 무역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클레임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최종목적지까지의 약속된 운송기일을 지키기 못한 운송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C항공화물이 D상사를 상대로 신청한 중재판정도 이같은 사례의 하나다.

D상사는 노르웨이의 바이어와 중국에서 생산된 가죽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C항공화물과 중국 청도에서 해상으로 운송한 후 다시 서울에서 항공으로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C항공화물은 선적후 13일내에 오슬로에 도착할 것이라는 선적통보를 했고 D상사는 오슬로 수입상에 같은 내용을 통보,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운송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체돼 화물은 약속했던 기일보다 8일정도 늦게 도착하게 됐다. 수입상은 이 제품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비싼 항공운송으로 수입한 것인데 화물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시즌을 놓쳐 버렸다는 이유로 상품인수를 거절하다가 결국 30% 할인가격으로 인수했다.

운송지역으로 손해를 보게 된 D상사는 손해만큼의 운송료 지불을 거부했으며 C항공화물은 이의 해결을 위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C항공화물측은 중국 청도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제3자인 H해운에 의뢰했으나 중국선사의 갑작스런 선박교체로 선적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사는 책임이 없을 뿐아니라 부산항의 화물적체로 운송이 더 늦어져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인은 이 건에 대해 C항공화물의 중재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화물이 가죽제품으로 통상 크리스마스 세일 등 연말에 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이며 때문에 서울에서 오슬로까지 운임이 비싼 항공운송을 택했다는 것은 운송회사측도 이 화물이 크리스마스 세일 등을 통해 판매될 상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중재인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C항공화물이 운송을 인수했고 나아가 D상사에 특정기일까지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후 어떠한 변경통보도 하지 않은 것은 당초 약속한 날까지 물품을 도착시킬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건의 운송지연은 중국 청도에서의 선적지연과 부산항의 화물적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날씨불순 등의 경우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바르샤바조약(해이그 의정서)의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했다.